



# 전문가 인터뷰

John Evans(OECD-TUAC(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 소개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 존 에반스는 영국인으로, TUAC에서 일하기 전에는 브뤼셀에 소재한 유럽 노동조합연구소(ETUI)의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그 전에는 제네바에 있는 국제상업사무전문노련(FIET)과 런던의 영국노총인 노동조합회의(TUC)에서도 일했다. 1973년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정치학, 철학, 경제학의 학위를 받았다.

한국의 노사정에게 최신 국제노동정보를 소개하는 국제노동브리프에 OECD-TUAC(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Q** 먼저 독자들에게 TUAC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UAC이 노동조합과 OECD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최근 주요 관심사는 무엇인지 간략히 알려주십시오.

**A**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는 OECD와 산하 각 위원회에 자문 역할을 하는 국제노동조합기구입니다.

TUAC은 1948년 마샬 플랜의 '유럽부흥계획'을 위한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로 발족했습니다. 1962년 OECD가 정부간 경제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창설되었을 때 TUAC은 OECD에 대하여 계속해서 노동 단체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OECD는 현재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고 세계화에 관한 정부간 토론의 장 역할을 하는 등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TUAC의 현재 역할은 세계 시장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일입니다. TUAC은 OECD의 각 위원회, 사무국 및 회원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선진국 노조 단체들의 견해를 조정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TUAC은 또 G8 연례 정상회담에 제시할 노조들의 입장을 조정하고, 고용관련 각종 회의 개최를 조정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TUAC의 통상 업무로는 OECD의 사무국, 각 위원회 및 회원국 정부와 협의, OECD 의제상의 각종 문제에 대한 노조 단체들의 견해를 주지시키는 일 등입니다. 또한 TUAC은 OECD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산하 노조에 정기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 발표문에 관하여 조정하며, OECD의 각종 회의 결과 및 간행물에 대한 평가 작업도 수행합니다. TUAC 사무국은 수시로 산하 노조와 기타 국제노조 단체와의 회의나 총회에 불러 나가 설명회를 가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노조 단체들은 정부간 정책 토론에 참여하게 되며, 동시에 정책 결정자들은 '사회적 파트너'들과 대화를 할 수 있

## John Evans(OECD-TUAC(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어 노동자 개인에게도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정부가 시장경제 체제하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정부전략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것입니다.

TUAC은 성명서 접수를 담당하는 각료회의 사무국과 협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OECD 각 위원회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노조 대표도 참가하게 됩니다. OECD 이사국들로 구성된 OECD 비정부기구 연락위원회와도 연례회의를 갖습니다. TUAC 대표는 또 일부 OECD 위원회나 실무그룹 회의에 정규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합니다.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안 중에는 실업과 일자리 창출,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지침'의 시행, 기업 지배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적용과 지속가능개발 문제 등이 있습니다.

TUAC은 이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산하 노조와 국제적 노조 단체, 특히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산별노련(Global Union Federations)과 긴밀히 협조합니다.

**Q** TUAC의 조직 구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제 노동계와 어떻게 원활한 협조를 하고 있는지요? 특히 한국의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A** TUAC은 30개 OECD 회원국의 전국 노조 중앙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6천 8백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56개 회원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노총(KFTU)과 민주노총(KCTU)은 1997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한 몇 개월 후 TUAC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도 수년간(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한국의 노동조합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TUAC 내 공식 의사결정기관은 연 2회(4/5월 및 11/12월) 개최되는 총회입니다. 이 회의에는 모든 TUAC 산하 노조 단체 및 국제적 노조 단체 대표들이 초청되며, 통상 약 50명 정도의 노조 위원장이나 사무총장, 국제국장, 경제 또는 연구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근 총회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주요 정책 성명서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승인하며, 사업 계획과 역점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TUAC 재정의 기초가 되는 예산 및 회비를 수립·결정하며, TUAC 간부 직원을 선출합니다.

현직 TUAC 위원장은 AFL-CIO(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 위원장 존 스위니이며, 부위원장은 벨기에, 덴마크와 일본이 맡고 있습니다. 6~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사무국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TUAC 본부에 있습니다.

또 경제정책, 세계 무역 및 투자, 그리고 교육훈련 및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실무그룹(작업반)을 두고

## John Evans(OECD-TUAC(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있는데, 이들 실무그룹에서는 총회 및 OECD 협의를 위한 TUAC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이들 실무그룹에는 모든 산하 단체나 국제기구, 그리고 TUAC 협력기관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OECD 연구대상 분야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특별회의도 개최합니다. 매년 평균 약 400명의 노조 대표들이 주로 파리 소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각종 TUAC 및 OECD 회의에 참석합니다. 예컨대, 한국 노조 대표들은 OECD의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와 TUAC과의 협상 과정에 정기적으로 참가해 왔습니다.

OECD가 일부 재정 지원하는 OECD 노동-경영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OECD 사업 계획에 오를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 및 경영 전문가들간 사전 협의를 하는 포럼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NEPAD, OECD 지침 및 OECD 개발지원정책에 관한 회의 등 비회원국 노조 대표들과의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개별 국가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서울에서 한국 내 산하 노조 단체들과 공동으로 프리트리히 에베르트 재단 한국 지부의 지원하에 일련의 워크숍을 개최해 왔습니다. 워크숍의 주제는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1995년), 노동조합과 세계화(1997년), 한국의 노사관계 개혁(1999년),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지침'(2002년) 등이었습니다.

**Q** OECD는 선진국들의 정책개발 연구소로서 특히 세계의 무역과 투자질서를 선도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세계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TUAC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A** 우리는 무역·투자 문제에 대한 국제 노조의 입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세계의 산하 노조들, 특히 국제자유노련(ICFTU)과 긴밀히 협조합니다. 선진국 노동조합이 개발도상국가의 노동조합과 다른 별개의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 회의에 국제노동조합 대표단으로 계속 참가했으며, 도하, 시애틀에 이어 칸쿤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세계 시장을 향해 효과적인 '사회적 고려(social dimension)'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 노조의 견해를 OECD 무역위원회에 제시하며, 투자에 관한 견해는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 위원회에 제시합니다. 무역에 관하여 우리는 OECD가 무역과 노동기준에 관해 연구토록 촉구했으며, 1996년과 2000년에 발표된 OECD 연구보고서 및 어린이 노동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OECD 연구보고서에 충분히 반영시켰습니다. 현재 우리는 OECD로 하여금 국제노동기구(ILO)와 긴밀히 협조하여 2004년 발표 예정인 ILO의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국제위원회' 보고서 작성을 돕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존 스위니 TUAC 위원장은 동 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OECD 회원국 수출신용보증에 추가할 효과적인 지

## John Evans(OECD-TUAC(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속가능개발 기준을 모색하기 위하여 비정부기구(NGO)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관하여 우리는-비록 협정이 실패하기는 했지만-'다자간 투자협정' 마련을 위하여 노조 견해를 OECD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동 협정안이 폐지된 후 우리는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지침'의 개정·발전을 위한 협상에 참여했으며, 동 지침은 2000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는 동 지침의 홍보와 시행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OECD 회원국 내와 OECD 비회원국에서 일련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TUAC는 '지침서 이용법'을 발간(현재까지 한국어 등 14개국어로 번역)하였으며, 노동조합들이 '국가별 연락사무소'에 문제 제기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세계화가 기본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큼니다. 사무총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속화되는 세계화 과정에서 노동권과 관련된 주요한 변화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TUAC의 장기적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A** 세계화의 효과에 대한 국제 노조의 일차적 관심은 효과적인 시장규제나 지배구조가 잠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세계화가 공공부문에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를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한국 노동자를 포함한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무역이나 투자 그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며, 특히 사회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관리할 규칙을 마련하고자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화가 범세계적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크게 유발시켰습니다. 여러 수출가공지역에서는 노동자 권리가 교묘하게 유린되고 있으며, 근로기준(시장에는 최저 기준이 필요하다)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근로기준을 규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도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ILO가 창설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아바나 헌장(Habana Charter)이 채택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세계화 물결과 WTO 협상은 이런 과거의 흐름을 새롭게 조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분야야말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또 국제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할 핵심 분야입니다.

노동권을 강제 규제를 하는 것은 아직 요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규제 목표는 추구해야 합니다. 노동기본권이 쉽사리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타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세계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기능하는 시민사회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세계무역 체제가 지적재산권, 투자자 권리 및 심지어 환경기준까지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점을 감안한다면 인권을 부정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 John Evans(OECD-TUAC(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1998년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노동기본권에 대한 일반적 정의가 내려지는 등,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WT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하나의 제도화된 기준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들은 각종 다국적 기업과 협상을 하며 그들을 위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지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2000년 6월 한층 강화된 지침이 새롭게 채택되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동 지침 이행을 위하여 ‘국가별 연락사무소’를 지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약 50건의 불이행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위반 사례 대부분은 고용 및 노동착취 관련 건들입니다. 우리는 해당 기업과 정부가 다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별 연락사무소’도 한국 기업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의류회사들과 관련된 문제가 몇 건 보고되었는데, 내용은 근로자의 노조가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사례 중 몇 건은 현재 해결 중이지만 ‘국가별 연락사무소’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기도 한 많은 유럽국가들이 OECD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EU차원의 사회정책과 고용정책, 기준과 규범이 개별 유럽국가들의 기존 노동제도들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OECD의 사회정책에도 서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OECD와 EU간의 협력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주로 거시경제 요인 때문이긴 하지만, 유럽의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고, 유로화(貨) 국가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됨으로써 유럽내 사회적 차원의 발전이 정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 의제(Social Agenda)’가 발전하려면 기업, 산업, 지역 및 노동시장을 사회적으로 균형화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경쟁력 있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산업조직모델(model for industrial organisation)’을 개발해야 합니다. OECD 회원국은 저임금 발전 모델에 기반을 두지 말고 수준 높은 근로기준에 기반을 두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OECD 내부에는 유럽 실업문제 논의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듯이 노동시장 분석에 있어 현격히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많은 유럽 재무부와 OECD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신고전주의’ 견해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노동시장이 정부도 통제하기 힘든 거시경제 충격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유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구하고 ‘자연’ 실업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OECD 일자리 연구(OECD Jobs Study)’가 권고하는 것으로, 단체교섭의 분권화, 협약에 대한 행정 간섭의 제거, 최저임금 규제의 완화, 명목임금 유지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서의 제품시

## John Evans(OECD-TUAC(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장 경쟁 유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한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질의 고용 창출을 통하여 실업률을 줄이려는 정책 따위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반전시킬 방도’가 부족합니다. ‘실직 빈곤층’은 사회적 중요성에 관계없이 ‘근로 빈곤층’으로 전환되는 위험을 무릅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OECD에서도 임금 편차, 고용 보호 및 고용 창출에 관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OECD 고용 전망(OECD Employment Outlook)’을 통해서 줄곧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같은 나라는 모두 미국 모델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강한 경제적 성과와 형평성을 결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OECD 및 G8 노동장관 회의에서도 저임금 및 저질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OECD 일자리 전략(OECD Jobs Strategy)’은 이제 재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EU 및 OECD 정책 권고 간에도 새로운 합치점을 찾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Q**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래, 노동문제에 관련해서 TUAC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논의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UAC의 입장에서 최근 한국의 노동관련 사안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A** 노사관계의 우선 과제는 갈등을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노사관계 제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도록 노동법을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던 군사정권 시절 이후 노사관계가 향상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TUAC은 한국에서 1999년에 이루어진 교원노조 및 민주노총에 대한 합법화와 노동쟁의에서 제3자 개입 관련 법개정을 반겼습니다. 그러나 2003년까지 최근 5년 동안에 800여 명의 노조원이 투옥되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업무 방해’로 체포되었거나, 아직도 불법으로 되어 있는 노조 결성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공공분야 근로자들입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2년 징역형으로 복역하다가 금년 초여름에야 석방되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노사관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례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훌륭하게도 취임 때 투옥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한국 노동법은 ILO로부터 계속해서 ‘결사의 자유’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여전히 노동문제에 대해 OECD 모니터링 대상국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등 기본권 관련 사항을 포함, 국제기준에 맞게 현행 노사관계 법규를 개혁한다”는 약속을 했으나 이를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John Evans(OECD-TUAC(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노동자 기본권 존중은 한국의 원만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결사의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노조원을 체포한다면 준법 풍토를 훼손하게 되고, 안정된 노사관계 체제를 확립하는 데 긴요한 신뢰 구축을 가로막게 됩니다. 안정된 노사 체제가 갖추어져야 갈등을 관리하고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경제구조 조정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Q** 말씀하신 것처럼, OECD에서는 한국의 노동사회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내년, 2004년에도 한국의 노동관련 사안들에 대한 평가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금년 7월 ICFTU 사무총장과 본인은 ILO 및 OECD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2004년 말까지 한국이 ILO '결사의 자유'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일정을 작성토록 요청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는,

- 모든 공무원이 자기가 선택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 복수노조 합법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 노조 전임자에 대한 고용주의 임금 지급이 법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 필수공익사업 리스트를 개정하여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그야말로 필수적인 업무에로 축소하도록 하며, 형법 제314조(업무 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Q** 한국의 노동시장이, 특히 해고제도가 국제비교 차원에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대내외 지적에 대해 사무총장님의 견해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한국 대기업들의 해고 규정이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더 엄격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한국에는 사회보호제도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직했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없고, 실업보험제도가 미약하며, 재훈련제도가나 재취업 소개제도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고용보호법 완화에 저항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노동시장 이동성을 발전시키려면 먼저 취업훈련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제대로된 사회 안전망을 개발·개선해야 합니다.

John Evans(OECD-TUAC(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Q 아직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세계 경제협력질서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TUAC 차원에서 이런 경향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있는지요?

A 중국에서의 노동기본권 억압을 통한 초저임금으로 야기된 세계무역에서의 압박이 개발도상국가들에게는 특히 심각합니다. 그 때문에 WTO 회원국들에게 ILO가 정한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제 노조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WTO에서도 제재하고 있는 강제노동(교도소 등)에 반대하는 운동이 중국에서 일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 침해 사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변화의 폭이 큰 만큼 노동 분쟁은 갈수록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결국에는 당국도 억압 정책이나 관제노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 제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한편, 많은 TUAC 회원 단체들이 OECD 국가에 기반을 두고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과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전략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일부 기업은 낡은 생산 시스템에 안주하면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저임금과 맞서 경쟁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경쟁 당사자인 기업들이 아니고 바로 그 기업에게 자신들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한편, 기업들 중에는 지식이나 창의력을 우대하는 새로운 사업 형태로 전환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기술-고신뢰(high skill-high trust)'에 기반을 둔 회사들은 대량생산 회사들보다는 분명 더 온건한 별개의 세계에서 경쟁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정책적 의미는 정부나 지방행정기관이 기술 보급, 혁신, '훌륭한(good practice)' 경영 기술, '정보 사회(Information society)'를 위한 적절한 기반 구축 등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고성장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하는 사회(Learning Societies)'와 지식기반 기업이야말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노동시장 규제 완화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추어 노동자들이 내적 기능에 유연성을 갖는 것이 기업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은 오히려 부적절할 수 있고, 잘못하면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저임금-저기술의 길을 건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금년 여름 국회를 통과한 '경제특구' 관련 법은 중국과의 경쟁 측면에서 볼 때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 John Evans(OECD-TUAC(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Q 끝으로 사무총장님의 TUAC에서 노조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면서 겪은 문제들과 그것을 극복해 낸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제가 1980년대 후반 TUAC 근무를 시작한 이래 세계는 실로 많이 변했습니다. OECD는 더 이상 '경제적 NATO'가 아니며, 오히려 비슷한 가치와 경제·사회적 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모임으로서, 세계 경제의 타주역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기구입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출현은 노조운동에 한없이 힘이 되었으며, 노동조합들은 민주화의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폴란드의 경우가 그렇고, 남아프리카와 브라질,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그러했습니다. 이들 노조원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실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 퇴치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일이 많은 것처럼, 인권과 노동조합권 신장을 위해서도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통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 산하 노조 단체들과 협력하는 일은 세계화가 각국의 고용이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쳐 각국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끔 연대, 실익 등의 기본 노조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정책의 최소 공약수로는 그 기본 이상의 것을 성공적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향후 과제는 개별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활동간에 진정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국제 노조 운동이 세계화 경제 속에서 사회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일입니다.